

# 2019년도 제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2. 19.(화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 정태호, 최승수(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1건(안전번호 제2019-879호~100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신문기사 게시물 5개 안건(제2019-879호~제2019-883호), 다른 블로그 게시물을 복제한 블로그 게시물 5개 안건(제2019-884호~제2019-888호),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한 게시물 1개 안건(제2019-889호)은 부결하고,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게시물 1개 안건(제2019-890호)은 가결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악보파일 판매 게시물 1개 안건(제2019-891호)은 부결하며, 네이버 밴드 내 영화게시물 2개 안건(2019-892호~제2019-893호)은 경고의 시정권고만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879호~1009호로 모두 131건임  
우선 안전번호 제2019-879호~883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신문 '○○○○○○○○'이 다른 인터넷신문인 '□□□□'의 기사 전문을 '○○○○○○○○'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한 사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879호~88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권리자 신고 민원 내용과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 주면서) 민원인은 '○○○○○○○○'에 대해 어떠한 이용허락도 한 사실이 없다고 전화통화로 진술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은 민원인 사이트 내 원 게시물의 제목을 일부 변형하거나 기사 내 사진을 삭제한 후 게시하였음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부당한 전제임이 분명하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정권고가 불가하므로 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 민원인에 부결의 심의결과를 알릴 때 별도의 소송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안내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해당 안내를 하고 있음
- C 위원 : 민원인 안내 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한 경우에 현행법상 시정권고가 불가함을 설명해야할 것임
- A 위원 : 이견 없으며 부결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879호~883호는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884호~888호 다른 블로그 게시물을 복제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민원인이 제출한 원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본 사안은 권리자로 추정되는 자가 신고한 것으로, 수학학원 운영자가 수학 교육업체인 민원인의 블로그 게시물을 복제하여 학원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원 게시물 작성자인 민원인은 2019. 2. 14. 민원을 취하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최승수 분과위원장 : 권리자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시정권고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 게시물 내용 역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쓴 것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 2019-889호 게시물은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게임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하거나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주소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우리 위원회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보아 시정권고를 해왔는데, 본 심의안전 게시물은 캡처된 이미지만 게시되어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보기 쉽지 않은 약한 형태의 정보로 판단되며 이것이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임
- B 위원 : 설치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이를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설명된 방법대로 하면 해당 게임프로그램이 실제로 설치가 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설명을 따라하면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A 위원 : 이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로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는 담고 있어 불법복제물 이용을 방조하는 게시물로 보이는데, 단순 정보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라는 개념은 저작권법이나 판례상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아니한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C 위원 :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에 자살방조죄의 죄책을 지을 수 있느냐와 비슷한 문제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로 판단하기 조심스러움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방법이 횡행하고 저작권 침해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차용하게 되면 그 때 저작권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만장일치로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제2019-890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본 사안은 제

2019-889호 게시물의 민원을 기초로 보호원에서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파일이 첨부파일로 직접 게시된 게시물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불법복제물을 첨부파일로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본 안건은 시판 중인 게임 저작물을 직접 게시한 것으로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판단됨
- A 위원 : 명백히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게시물로 판단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한 안건번호 제2019-889호 게시물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에 관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므로 본 안건에는 시정권고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890호는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91호 악보 판매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게시한 악보 파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안건번호

호 제2019-891호 게시물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외 유명 유튜버가 직접 채보한 피아노 연주용 애니메이션 악보를 게시한 사안임  
해당 유튜버는 피아노 연주용 악보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 게시물을 올린 악보 판매 사이트 운영자는 유료로 판매하고 있음  
(악보 판매 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보여주면서)한편 위 악보 판매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C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이용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황에서는 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심의위원회 관례에 따른 것인지 의문임
- C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이 아니어서 시정권고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A 위원 : 우리 위원회가 심각한 저작권 침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민원인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심의결과를 전달할 때 현행법상 심의 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자세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제공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원에서 관련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이러한 민원의 수가 누적되면 저작권보호원의 설립취지나 기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민원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 게시에 대해서는 부결할 수밖에 없는 취지를 설명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일반인 신고 민원 내용과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 주면서)안건번호 제2019-892, 893호는 최신 영화가 네이버 밴드에서 무단 제공되고 있다는 익명의 일반인 신고를 기초로 보호원이 해당 밴드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92, 893호 네이버 밴드 내 영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현재 게시물에 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해서가 아니라 네이버 밴드 정책 상 30일이 지나면 파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임  
게시물의 첨부파일은 다운로드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밴드 우측 파일창에서는 여전히 다운로드가 가능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대상 게시물을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게시물로 간주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파일삭제가 아니라 기간만료에 의한 기술적 요인으로 다운로드가 불가하게 된 것인데 우측 파일 창에서는 다운로드가 별도로 가능하므로 경고 조치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A 위원 : 삭제의 시정권고 조치도 필요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에 첨부된 불법복제물은 다운로드 기간 만료로 현재 이용이 불가능함  
(해당 밴드 메인화면을 보여주면서)시정권고 심의와 집행은 게시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url 주소로 특정되는데, 현재 다운로드가 되는 파일은 보호원에서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 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밴드에 들어가면 오른쪽 창에 노출됨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밴드 오른쪽 창에서 파일 다운로드가 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A 위원 : 이번 심의에서 결론을 내기 어렵지만 보호원에서 네이버 밴드에 불법복제물을 방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우회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 판단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892, 893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894~1009호 게시물은 모두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B 위원 : 웹하드 사이트의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94~1009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79~889호, 제2019-891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892, 893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기로 의결하며, 제2019-890호, 제2019-894~1009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폐회 선언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